

# 외과 세부.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

## 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외과 세부.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2 조 (정의)

“외과 세부.분과전문의”라 함은 외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외과학회가 인정하는 외과 세부전문분과(이하 분과라 한다.)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로서 해당 외과분과에 관한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임상외과사를 말한다.

## 제 3 조 (의의)

외과 세부.분과전문의의 자격은 외과분과의 외과전문의사로서 임상외과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대한외과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.

## 제 4 조 (분과)

대한외과학회는 아래와 같이 6개 외과분과에 한하여 해당 분과의 세부.분과전문의를 인정한다.

- 1) 간담췌외과 분과
- 2) 대장항문외과 분과
- 3) 소아외과 분과
- 4) 위장관외과 분과
- 5) 외과 유방질환분과
- 6) 외과 혈관질환 분과

## 제 5 조 (조직)

외과 세부.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산하에 아래와 같은 위원회를 설치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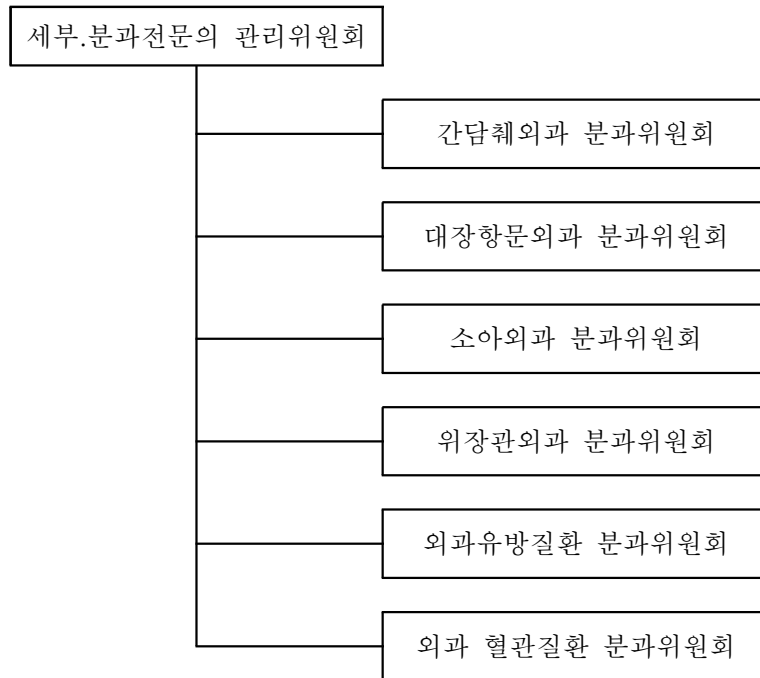
### 1) 외과 세부.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(이하 관리위원회)

- (1) 관리위원회 위원장(이하 관리위원장이라 한다)은 대한외과학회의 세부전문분과이사가 되고 12명 이내의 관리위원을 둔다.
- (2) 관리위원 중 부위원장 1인, 간사 1인을 선출한다.
- (3) 관리위원회는 외과 세부.분과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.
- (4) 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.

### 2) 분과 위원회

- (1) 관리위원회 산하에 제4조에 규정한 4개 분과별로 위원회를 설치한다.

- (2) 각 분과위원회에는 관리위원장이 추천, 대한외과학회 이사장(이하 이사장이라 한다)이 임명하는 위원장을 두고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1인씩 선출한다.
- (3)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추천, 관리위원장이 임명하는 12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.
- (4)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


제 6 조 (수련)

- 1) 외과 세부.분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외과학회가 지정한 세부.분과전문의 수련병원(이하 수련병원이라 한다.)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.
- 2) 수련기간은 외과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한다.
- 3) 수련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. (단, 군의관에서 전역하는 경우는 5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.)
- 4) 전임의의 정원, 수련내용과 과정, 수련규칙 및 기록, 임용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 별로 별도로 정한다.

제 7 조 (수련병원)

- 1)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과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외과가 설치되어 있고 외과전문 지도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, 기타 인적,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- 2)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외과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 한하여 수련병원으로 지정한다.
- 3)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상세한 기준은 해당 분과위원회 별로 별도로 정한다.

제 8 조 (자격인정)

1) 자격인정 방법

- (1) 자격인정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대한외과학회에 제출하고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수험 자격을 가지는 자에 대해 시험을 시행한다.
- (2) 외과 분과전문의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대한외과학회에서는 분과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하며 교부 시 인정료를 징수한다.
- (3) 자격인정 신청 및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2) 자격인정 기준

- (1)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인정 신청 시 대한외과학회 평생회원인자
- (2) 자격인정 신청 시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자, 단 군 복무기간은 예외로 인정한다.
- (3) 대한외과학회 지정 외과 세부.분과전문의 수련병원의 외과 해당 분과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받은 자
- (4) 상기 제 1, 2, 3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격인정 신청자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한 자에게 세부.분과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한다.
- (5) 기타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자격인정 시험에 응시하거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.

제 9 조 (시험)

- 1) 세부.분과전문의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2) 세부.분과전문의 자격인정 시험의 방법,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10 조 (자격인정의 유효기간)

- 1) 세부.분과전문의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인정 년, 월, 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.
- 2) 매 5년 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- 1) 본 규정은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- 2) 제 1차 외과 세부.분과전문의는 서류 심사로 선발하며, 서류심사 자격인정기준은 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 단, 제 1차 외과 세부.분과전문의 서류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1개 분과에만 응시할 수 있다.